

• 법률 • • 세무·회계 • • 노무 • • 창업 •

민화인의 웹포테스크 2023 시리즈집



만화인 헬프데스크

2023 사례집

**본 사례집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2023 만화인 헬프데스크'의 상담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질문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개인적 의견일 뿐,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I . 만화인 헬프데스크

03 - 만화인 헬프데스크 소개

II . 만화인 헬프데스크 FAQ

05 - 계약서 검토

21 - 저작권

41 - 계약 해지

III . 2023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

58 - 사업 소개

59 - 자문위원 소개

60 - 상담현황

I. 만화인 헬프데스크

만화인 헬프데스크 소개



○ 만화인 헬프데스크 소개

● 만화인 헬프데스크란?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만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만화인의 권익보호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세무, 회계, 노무, 창업 분야의 전문가 무료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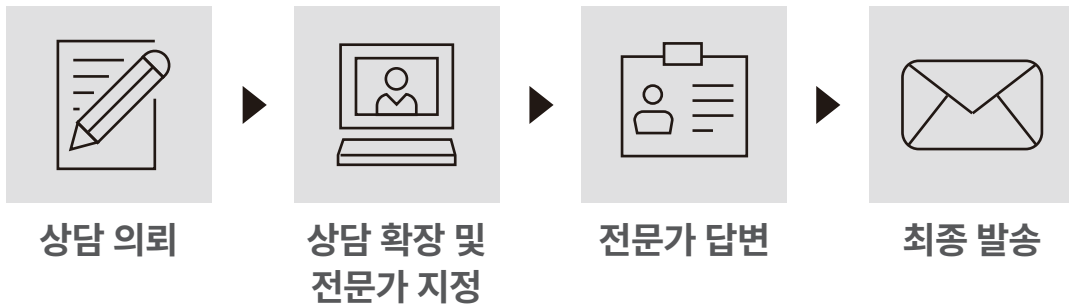
● 상담방법 및 절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
 '만화인 헬프데스크' 접속
<https://www.komacn.kr>



만화인 헬프데스크 접속 QR 코드

● 온라인(서면, 계약서 검토)



● 오프라인(전화, 화상, 대면)



II. 만화인 헬프데스크 FAQ

계약서 검토



Q.

수정 횟수와 관련된 내용이 따로 적혀있지 않습니다.
무리한 수정요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요청을 해야 하는 부분있는지,
궁금합니다.



A.

수정횟수에 대한 내용은
서면상, 구두상으로 합의 된 내용이
있으시다면 해당내용에 관한 증거를 남겨두시거나
없다면 내용확보 후 자세한 사항은
조항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세부내용을 검토한 후
계약서 상으로 표기합니다.

Q.

'제작허락 기간' 내에 '웹툰'의 연재를 시작한 경우 당사자 간 별도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웹툰'은 영구히 게재, 유통될 수 있으며 '작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계약에서 영구히 게재라는 뜻이 제작허락 기간으로 국한되는 것인지, 혹은 제작 허락기간 외에도 영구히 게재, 유통 될수 있다고 해석 될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제작허락 기간'은 제작사가 극본을 이용하여 2차적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사는 제작허락기간 동안은 귀하의 극본을 이용

하여 웹툰 등 2차적 저작물(수정, 변형)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게재, 유통'이라 함은 이를 웹사이트 등에 게시 하는 등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사는 귀하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작품을 영구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바, 그 기한을 제한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Q.

광고기재와 광고 제안을 받았을 때,
만약 광고사에서 제게 몇컷의 원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저도 수익을 받을 수지 궁금합니다.



A.

예정하신 '광고사에서
몇 컷의 원고를 요구한 경우'는
대리중개업으로의 업무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작가님이 수익을 받는 것이
원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수익은 MG를 산정하는 요소에 포함되어
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작가님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업체에 1) 월별 수익과 2) 직접 매출과 이와 같은
광고 매출을 나누어 각 매출 현황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투명성 있는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계약서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하여 주시면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Q.

**계약 도중 계약서 변경 제안을 받았으나
제게 불리한 것 같아 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A.

**계약서의 변경 제안에 대해서는
꼭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자께서 판단하셔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변경에 응해도 되고, 아니면 응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 상당자께서 변경에 응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우선 사업자와 합의를 하고,

그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부속합의서' 형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보내주신 계약서의 '동의서'와 비슷한 형식입니다.

**추가 조항은 결국 합의한 내용을 말로
잘 정리하는 것이어서, 우선 합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Q.

상대방 회사에서 약속했던 지원 사항 (밑색, 소재나 스케치업 등)을 지키지 않고 있어 계약을 해지 하고 싶으나 워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 이후 워 지원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해 두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워 지원사항 약속이

- ① 계약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졌고
 - ② 계약 체결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 ③ 이 건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이었는지,
 - ④ 이로 인해 고료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설명하고,
 - ⑤ 현재 지원사항 약속이 불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 ⑥ 이에 지원사항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 ⑦ 1달 정도의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불이행시 이 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 이후에 회사의 반응에 따라 워 사항들에 대한 추가합의 및 이 건 계약상 불합리한 조항들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회사가 콘텐츠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콘텐츠 일부를 수정, 삭제,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 경우 회사가 저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자세히 변경해달라고 요청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A.

회사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작가님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질의에서 적어놓으신 것과 같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는 더 구체화하기 어려운 점, 사전 동의 시 동일성을 해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성을 보다 자세히 규정해달라는 요구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해외제작사와 계약시 혹여나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와 한국어 두가지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작성된 언어에 따라 판결하는 주체나 적용법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질문자께서 외국어계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한국어로만 계약을 작성하거나 한국어와 외국어 모두로 계약을 작성하되 '두 가지 언어의 계약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한국어 계약이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외국어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반드시 한국어로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계약이 준거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준거법에 대한 묵시적 합의를 판단하는 경우 계약의 언어가 고려요소가 됩니다. 즉, 계약서가 외국어로만 작성되어 있는 점은 해당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거법을 확실히 대한민국법으로 하고 싶다면 본건 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Q.

계약기간 종료 시 작품 열람비율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는 계약에서, 만약 계약기간 종료 전에 플랫폼이
사라진다해도 해당 수익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방식,
비율로 정산할 것인지에 대해
대부분 계약서나 부속합의서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서에서 합의 된 사항은 플랫폼 폐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계약종료 시점이나,
정산일을 기준으로 수익을 정산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내용증명 등의 다른 법적조치로
요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만, 플랫폼이 사라져서 수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익'이 없으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정해져있는 것에 관련하여,
법원을 꼭 미리 정할 필요가 없다면 정해두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부분을 삭제 요청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A.**

**삭제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관할이 없으면, 관할은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Q.

회사에서는 완성도가 심하게 떨어지는
콘텐츠를 제공하며 제게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까지
작업하라며 과도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A.

우리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표에 대한
수리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정확히 업무에 대한 분배가
기재 되어있다면 작가님께서 이를 이행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어시스트로서 계약 시 작가로서 활동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이러한걸 명시하는 조항을 넣어 보완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 게 좋을까요?



A.

어시스트의 업무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 시 작가나 편집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어 어시스트 작가의 서명이 게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필요성을 작가님이 업체에 설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어시스트 작가의 서명이 계약서에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진다면 "저작자의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의 대한민국 내 예술활동증명을 위하여 성명표시권은 행사할 수 있다."와 같은 보완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만화가의 웹툰 제작 업무 범위 관에 '연출' 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범위의 연출까지인지
제한 할 수 있을까요?



A.

**이 부분은 스튜디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한 내용을 가능한 계약서 내에 나열하여,
후에 추가적인 업무가 나열된 내용을 벗어나는 경우,
추가 비용 청구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Q.

2차 제작물 제작 시(ex)이모티콘) 제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수와 계약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명시 할 수 있을까요?

**A.**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스튜디오가 모두 가지고 있다면, 그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스튜디오는 별도의 보수를 선정한 별도의 계약을 작가님과 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Q.

"순매출"이란 총매출에서 결제수수료와 플랫폼서비스수수료, 유통수수료, 원작 사용료 등 저작물의 정상 서비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취한 금액을 의미하며 플랫폼서비스수수료, 유통수수료는 각 플랫폼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계약서 체결시 여기서 "순매출" 정의를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 유통 수수료는 이해가 가는데 원작 사용료와 그외 부대비용은 회사측의 업무 비용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작화가가 함께 부담하는것이 맞는걸까요?



A.

수익배분의 대상이 순매출인데, 순매출의 산정에 있어서 총매출에서 원작사용료를 제외한다는 것은 회사가 원작사용료는 우선적으로 보전받겠다는 의도라고 보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회사와 작가들 사이에 저작물 제작의 경위, 원작사용료의 금액, 저작물의 흥행가능성, 작가의 인지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Q.

**계약종료 시점에 별도 협의가 없을 시
자동으로 연장하는 계약진행 시
종료 시점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A.

**대부분의 계약서는 MG와 정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시점에는 계약을 종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종료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MG와
정산금 내역을 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 상 계약이 종료되어도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한, 정산금은 계속 지급되는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정산금의 지속적인
지급 여부를 회사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II. 만화인 헬프데스크 FAQ

저작권



Q.

**기획만화의 특징상 기획을 주도한 회사에
저작권재산권이 있지만 그 말이 회사가 작가 두사람의
합의 없이 멋대로 다른 곳에 작품을 팔고
수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A.

**계약서에 저작권재산권을 발주처에
양도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면 작가님들의
합의 없는 곳에 연재하는 것에는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 저작권재산권 양도가 되었으나
일정기간 또는 기간의 제한없이 저작물로 인한
수익배분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수익을 나누어야 합니다.**

**수익발생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독점이 가능한가요?



A.

**작업하신 작업을 자체에 대해서는
작가님께서 저작권이 있습니다.
사업화를 가능케 하는 '웹툰'이라는
완성된 결과물은 공동저작물입니다.
협업작이더라도 단독으로 작업하신 결과물은
작가님께서 저작권자로 권한을 행사하실 수는 있지만,
'웹툰'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용하실 경우, 타 공동저작권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Q.

**2차적 저작물에 대해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A.

**작가님은 창작한 웹툰 콘텐츠(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그에 대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
이용할 권리, 즉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갖게 됩니다(저작권법 제22조).**

**이를 감안하여 대개 계약에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본건 계약의 체결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승인한 업체'가 아닌 업체와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작허락기간에서 제작사가 가지는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A.

제작허락 기간'은 제작사가 극본을 이용하여 2차적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사는 허락기간 동안은 극본을 이용하여 웹툰 등 2차적 저작물(수정, 변형 등)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Q.

2차저작물에 번역저작물의 권한을 제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역된 원고의 저작권은 플랫폼이 모두 가져가는걸까요? 유료수익이나 추가 고료를 요구할 순 없을까요?



A.

번역물의 작성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합니다. 번역물 작성에 대한 권리를 작가님이 업체에 부여한 것이고 이 시점에서 작성된 2차적 저작물 자체에 대한 권리를 업체가 갖는 것으로 계약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점에 대하여 번역물 판매 과정에서의 인센티브 부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역시 반드시 업체가 수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캡처 장면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A.

**저작권의 기본법리상,
저작권이 있는 포스터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에 따라 말씀드리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이용이라는
법리가 그것입니다. 공정이용이란 특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3조~제38조까지가 이에 대한 규정인데, 공정이용에 대한
일반규정인 제35조의5를 보면 공정이용이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동조 제2항에
등장합니다, 이 내용들과 함께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업적 이용이 무조건 공정이용으로
인정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업적 이용이라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가님의 경우, 상업적 이용이 아니고, 만화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Q.

공동저작물의 후속작을 저의 동의 없이 글작가 혼자서 후속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속작이 포털에 연재가 될 시엔,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혹은 후속작의 연재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1인이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기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후속작의 연재 자체는 후속작 제작, 그리고 연재라는 두 가지 행위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글작가의 행위이고, 후자는 포털을 운영하는 플랫폼 운영자의 행위입니다. 행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으나, 글작가 또는 포털을 운영하는 플랫폼 운영자 등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서 저작권침해 등을 이유로 연재 중단을 요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재가 중단된다고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번역콘텐츠'의 저작권권은 회사에 공동으로 귀속한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

작가님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권은 양도하거나 공동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위 질의사항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번역콘텐츠가 2차적저작물로서 인정받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회사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 부여되는 저작권권을 갖지 못합니다.

Q.

**오리지널급의 각색으로 캐릭터설정과
원작 웹소설의 기본 배경만 가져가고 1화부터
무조건 제 오리지널 스토리인데요.
이럴 경우 저작권자는 누가 가지는 걸까요?**



A.

**원 저작물과 작가님의
작업 결과물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소설과
똑같은 내용으로 만화를 작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물은 원 저작물과 구별되는 별도의
저작물입니다. 이런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2차적 저작물은 별도의 저작물이고,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별도의 저작권을 갖는 저작권자입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의 경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가 원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작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가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가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작가님에게 저작권을 넘길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강제할 경우 불공정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제작된 번역물'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제작된 번역물은 2차 저작물의 해당합니다.
귀하의 저작물을 번역하는 것은 2차적 저작에 해당하며,
번역 등 2차적 저작은 원저작자의
동의를 있어야 가능합니다.**

**통상은 원저작권자는 번역에 대한 동의의 대가로
2차적 저작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것으로
약정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번역자 등
제3자에게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원저작자의 권리를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저작물 작성 과정에서 단순 아이디어,
창작의 힌트, 테마만 제공하거나 창작을
의뢰한 자도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나요?



A.

우선 공동저작물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공동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 ① 개별적 이용이 불가능할 것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에 관여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창작에 관여할 것'이라는
요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창작에
관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요건인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성 있는
표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 아이디어, 창작의 힌트, 테마만 제공하거나
창작을 의뢰한 것은 창작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공동저작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 소속의 보조작가를 웹툰 제작에 투입해도
공동 저작자로 인식 할 수 있을까요?**



A.

**보조작가가 담당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조작가가
채색을 담당한 경우, 보조작가의 채색이 내용상
색채가 미리 정해져 있거나, 하늘을 파란색으로,
나뭇잎을 초록색으로 채색하는 등 사물의 색을
그대로 채색하기만 한 경우라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색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서 보조작가가
자율성을 갖고 독창적인 색을 채색하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 구별되는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그 권리의 성질상 당연히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저작인격권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조작가로 활동한 제가 작업한 내용을 포트폴리오에 기재할 수 없는 걸까요?



A.

통상적으로는 "은은 자신의 업무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비영리방식에 한하여 자신의 작품 성과를 표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갑은 이의를 표하지 않는다."와 같이 보완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어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기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방식도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업체와 반드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공동저작물의 경우
무조건 5:5로 저작권을 공유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대로,
약정이 없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인정하는 것이 법 내용인데,
실제로는 수익분배율을 약정의 내용으로 추정하는 것이
법원 입장이라, 수익비율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요즘은 수익 비율도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경향이라, 수익비율로 저작권 분배비율을 정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저작권 분배비율을 명확히
약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표절 인정이 표현의 일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A.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가져다쓰는 것은
그 자체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창작에 참고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져다쓰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Q.

**제호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면,
상표 등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은
사업 모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튜브 영화리뷰와 같은 콘텐츠에서
웹툰을 소개하는 것이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영화와 마찬가지로 웹툰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웹툰의 내용 상당 부분을
유튜브 콘텐츠에서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Q.

**Ai 이슈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Ai로 그리는 웹툰작가가 있는데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A.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Ai에게 아이디어만 부여하면서 어떠한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그리도록 한 경우에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물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i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람이 Ai에게 아이디어를 넘어 표현의 영역에 해당할 정도의 구체적인 묘사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면 Ai는 단순한 조수에 불과하고 그러한 표현을 한 사람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표현 부분은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II. 만화인 헬프데스크 FAQ

계약해지



Q.

플랫폼이 무응답인 상태, 급여 등 아무런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의 효과는 회사가 존재하는 한 발휘되는 건지, 별도로 다른 타 플랫폼에 계약했던 작품들을 올려도 무관한가요

**A.**

이 부분은 현재 계약서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의로 다른 사이트에서 연재를 시도할 경우, 계약서 상 손해배상 항목이 존재한다면 그 의무가 존재 하기에 계약해지를 먼저 선행하셔야 합니다.

Q.

현재 무리한 수정 요구에 의해 계약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만약 상황을 감행한다면 세후 금액으로
(통장으로 받은 금액)으로 돌려주면 되는지,
아니면 세전 금액으로 내야 한다면 세금 부분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A.

무리한 수정요구에 따른 계약 중단에 이르게 될 경우, 먼저 원래 계약 취지대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 등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계약 내용 및 경위, 전제된 내용들에 의해 판단하여 수정 요구 내용이 이 건 계약에서 정한 범위내에 있음에도 계약을 중단할 경우, 작가님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는 것에 해당되어 전액 반환의무가 문제되고 원칙적으로 작가님이 받은 금액이 반환기준이 될 것입니다.

Q.

지속한 보류요청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류기간 도중에 저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일방적으로 상실 신고하였으며
상실 신고를 한 후 제게 별도 연락이 없었고,
자발적으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요?



A.

**작업보류가 없이
계약이 계속 이행되었더라면
예술인 고용보험 또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결국 회사측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예술인 고용보험 또한 실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실효와 관련된 손해 또한
신뢰이익상당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작가님이 본 계약이 없었다면
다른 일자리를 얻거나 다른 계약을 체결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가입기간
9개월 유지 후 3개월간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중도참여 작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실 수익 배분을 확인해보니 제가 작업하지 않은 (합류하기 이전의) 웹툰 기존 회차의 개수가 제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수익배분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웹툰의 기존 회차의 수가 작가님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실상 기존회차의 수익 영향을 받아 수익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작가님에게 설명이 없었다면 이점을 부각시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계약서표지에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직장내 상사의 폭언과 가스라이팅, 자살협박에 시달려 결국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으나 회사에서는 사측에서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이와 같은 이유로 퇴사 시 손해배상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

수신인이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주장하고자 하는 이유인 '폭언', '가스라이팅', '자살협박'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고, 그 증거자료가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도 상기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면 수신인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하여 근로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신인이 언급한 직장내 상사의 '폭언', '가스라이팅', '자살협박'은 「근로기준법」 제7조1, 제8조2, 제76조의23에 저촉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Q.

그림작가로 진행하고 있는 에이전시에게서
콘티작가의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작업을 멈춰달라는
상황에서 제가 작업한 분량의 개수만큼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이로 인한 사측의 계약해지 요구를
받아 드려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

기존 콘티 작가가 업무에서 빠짐에 따라
신청인께서 이후 작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신청인측 사정이 아니라 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청인께서는 일반적인 계약서 상
정산금액이 논의 되었다면 이미 작업이 완료된 분량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콘티작가가 업무에서 빠짐에 따라 신청인께서
이후 작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신청인측 사정이 아니라
사측의 사정입니다. 따라서 신청인께서는 사측에서
요구하는 해지(계약종료)합의서에 서명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사측이 작업이 완료된 작품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시즌이 마무리 될 즈음 계약 연장 기간에 작품의 수익을 보고 계약 조건을 다시 조율할 수 있을까요?

**A.**

우선 수신인이 원하는 조항 내용을 상대방에게 문의하는 것은 그것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수신인의 자유이므로 발신인에게 문의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수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미래에의 상대방과의 조율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

정확한 이유 설명없이 내부사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요?



A.

작가님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가진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노동법에 의한 구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개 계약에서 작가님이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특정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성과물(작화)을 제공하는 도급계약적 성격이 강한 계약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철회가 없는 한 계약 해지를 돌릴 수는 없으나 작가님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Q.

<손해배상>의 한 조항에서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작가"는 "대상저작물"의 수익배분권리를 포기한다.' 고 하는데요. 대상저작물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A.

계약서 상 대상저작물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대상저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시거나, 대상저작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상호간 이견이 없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상저작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없고, 대개 계약의 대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인센티브제로 정산 시 '작업자'의 요청으로 계약을 해지할 시에도 계약 종료 이후에는 인센티브 지급 또한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업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더라도 해당 저작물로 인해 계속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 경우에도 수익 분배를 받는 게 공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중도에 작품을 중지했다면 이후 부분은 다른 작가가 작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가님께서 작업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Q.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웹툰 저작물'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는 조항에서 계약기간을 두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A.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웹툰 저작물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게 되면,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도 지속되므로 위 조항에 따르면 매우 긴 기간 동안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기간을 정해두면,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작가와 회사가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재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작가 입장에서 무기한 계약의 경우,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줄 수도 있지만, 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어렵습니다.

Q.

계약서상으로 계약 화수, 금액 등을 표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

계약서상 작품 제작기간, 제작화수 등이 표기가 되지 않은 것은 문제이나,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계약이란 '구두'로도 성립이 가능한 것인만큼, 비록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다른 방법(녹음, 이메일 등)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이 역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지시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A.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작가님에게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계약 위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계약 해제·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될 경우, 상대방은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의 표현을 빌면 "상대방의 계약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계약이 중도에 종료함으로 인해 작가님이 받은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능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예술인복지재단 등에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는 액수가 크지 않을 것이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 형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Q.

**"최종거절권"이 "제작사"쪽에 있는 경우
제작사에서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도 상대측에서
무조건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A.

**네. 다만 이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종거절권은 의사표시의 자유 중 하나로
IP 소유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상대방의 제안이나
협상 조건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계약서 상 최종거절권이 제작사 쪽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IP 소유자가 최종거절권을 밝히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이 '원작IP활용 콘텐츠'를 공동저작물로 보고,
작가님께 저작권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여도,
속편, 스피노프, 리메이크 등을 만들 경우,
원작 IP를 가진 자의 동의 역시 필요합니다.
작가님의 '원작IP활용 콘텐츠'에서의 공동저작권을
인정하고, 위 작품을 만드는데 작가님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III . 2023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

사업 소개
자문위원 소개
상담현황



○ 사업 소개

사업명

2023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

사업목적

- 만화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만화콘텐츠 산업의 성장 도모
- 공정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권익보호 강화

운영개요

상담분야 법률, 노무, 회계, 세무, 창업 등

상담대상 만화가, 예비 만화가, 만화관련 종사자, 만화기관 및 협단체 등

상담방식

비대면

내용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자문위원 지정하여 자문내용 전달, 자문위원 지정 답변 수령(이메일, 상담신청 후 7일 이내 결과통보)
- 사전 예약 후 서면상담, 전화상담, 화상상담 운영, 상담방법 중 이용자택 1
- 서면, 전화상담의 경우 1차 상담 후 심층상담 수요 발생 시 화상상담 진행

시간

(신청) 상시 운영
(응대) 평일 10:00 ~ 17:00

대면

내용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자문위원 지정하여 자문내용 전달, 자문위원 지정 답변
- 사전 예약 후 대면 상담(수요에 따라 조정)

○ 자문위원 소개

분야별 자문위원

노무

- 김성중 노무사
- 김해원 노무사

법률

- 김필성 변호사
- 이영욱 변호사
- 안순섭 변호사
- 김한가희 변호사
- 이관용 변리사
- 이지훈 변호사
- 우원상 변호사
- 김경태 변호사
- 우광제 변리사
- 김소이 변호사
- 최민령 변호사
- 장철영 변호사
- 김정희 변호사

창업

- 신기종 컨설턴트
- 유진혁 대표이사
- 정재환 차장
- 장영구 대표이사

세무 회계

- 안영현 회계사
- 윤장우 세무사
- 임영은 회계사

○ 상감 현황

분야별 상감현황

법률	계약서 검토	총 145 건	60.92%
	계약 해지	총 49 건	20.59%
	기타	총 8 건	3.36%
저작권	저작권	총 20 건	8.41%
	상표권	총 1 건	0.42%
세무 회계	회계	총 11 건	4.62%
	수익금 정산	총 2 건	0.84%
노무	노무	총 1 건	0.42%
기타		총 1 건	0.42%

2023년 총 상감

법률 202건, 저작권 21건, 세무·회계 13건, 노무 1건, 기타 1건 총 238건

2023 만화인 헬프데스크 사례집

총괄 | 신종철
기획 | 김선미, 이미정
진행 | 심헌필
감수 | 김한가희, 이지훈
발행일 | 2023년 12월 20일
발행처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디자인 | (주)브랜드콘텐츠



• 법률 • • 세무·회계 • • 노무 • • 창업 •

만화인 헬프데스크

2023 사례집

만화인 헬프데스크란?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만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만화인의 권익보호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세무, 회계, 노무, 창업 분야의 전문가 무료 컨설팅

안내

방문장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상담예약

온라인 상담 : 상시
오프라인 상담 : 월 1~2회 유동적으로 운영

신청문의

1577-726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상담방법 및 절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
'만화인 헬프데스크' 접속
<https://www.komacn.kr>

온라인(서면, 계약서 검토)



오프라인(전화, 화상, 대면)

